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7-15168호

시행일자 2024. 2. 28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32호(2024. 2. 27.)

3.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」 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- 제6조제1항 제3호의2중 "별지 제8호"를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"로 하고,같은 조 제2항 제3호의2나목 중 "60개월 이내"를 "60개월"로 함
 - 별지 제5호, 제7호 및 제8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, 별지 제9호 신설
- 나. 시행일 : 2024. 2. 27.(화)

#붙임자료 : 보건복지부 일부개정안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*수신처 : 각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)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